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2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윤준병 · 어기구 · 임호선
주철현 · 문금주 · 이원택
서삼석 · 임미애 · 송옥주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장이 정관이나 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및 조합장이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영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삭제>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삭제>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삭제>
9. ~ 19. (생략)	9. ~ 19.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신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1천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u> 2. <u>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u> 3. <u>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u>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